

더 나은 경북을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김희수 의원 외 12명)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1
----------	-----

발의연월일 : 2024. 1. 15.

발 의 자 : 김희수·임기진·최태림  
김일수·박선하·박성만  
강만수·김대진·박용선  
김창혁·최병근·이춘우  
이선희 의원(13명)

##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인사·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처우개선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8조).

나. 사회복지시설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

### 3. 개정조례안: 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관계법령 발췌: 붙임

### 6.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검토 완료

- 예산입법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40, '24. 1. 9.)

나.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무혁신담당관(정책기획관-249, '24. 1. 5.)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정책기획관-249, '24. 1. 5.)

라. 해당부서 의견: 별도의견 없음

-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정책기획관-249, '24. 1. 5.)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7.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각각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상북도지사(이하”를 “경상북도지사(이하”로, “위하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처우개선 등 사업)”을 “(처우개선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수체계 일원화)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권익보호,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②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보수체계 일원화)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8조의2(보수체계 일원화)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8조의2의 경우 재정소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이전에는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4. 작성자

-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주사보 전해진 (054-880-3714)



# 경 상 북 도



수신 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사회복지과-102(2024. 1. 3.)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대체인력지원사업 및 보수체계 일원화 등의 시행을 위하여 비용이 수반 될 것으로 추정 되나, 약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북도 약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청부 의견은 적정함.</li> <li>다만,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 발생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비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검토 및 예산부서와의 재정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ul>

끝.

## 경 상 북 도 지 사

관인생략

주무관 **권오순** 예산총괄팀장 **권미숙** 예산담당관 **전경 2024. 1. 4.**  
**윤희만**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61 [2024. 1. 4.] 접수 사회복지과•179 (2024.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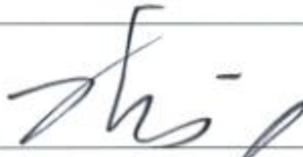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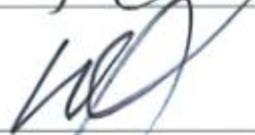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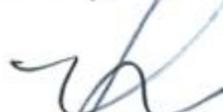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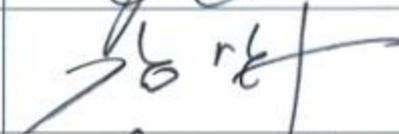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jovi271@korea.kr](mailto:jovi271@korea.kr) / 대한민국 공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 발의의원 서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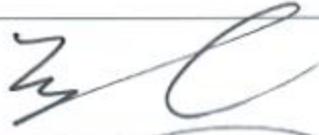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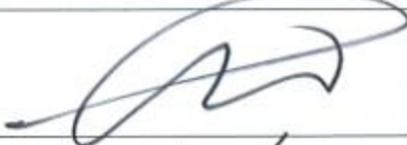
(제명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사인	비 고
김희우		
김기진		
최재환		
김익우		
박승화		
김성민		
강민수		
김대진		
박용선		
김창현		

※ 서명: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씌(서명 시 정자로 기입)

##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사인	비 고
주미 병기		
이 훈우		
이 선희		

※ 서명: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서명 시 정자로 기입)